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조선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  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  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09.05.28 ~ 2010.05.27  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  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삼성증권,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, 미래에셋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06.18	제20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	① ~ ④ (생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조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
	제32조(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 청구권)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	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

	<p>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수 없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
제35조(투자한도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제36조(운용제한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(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)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</p>

	<p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.</p> <p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p> <p>2. ~ 6. (생략) ② ~ ③ (생략)</p>	<p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는 거래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.</p> <p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제46조(신탁 계약의 변경)	<p>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 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·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. 제3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3. ~ 8. (생략) ② ~ ③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 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 ·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. 제3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신탁업자의 변경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 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(주)의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